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7
----------	------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사무 위임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임이 불필요한 사무의 삭제 및 기타 위임 근거 법제명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계량에 관한 일부 사무권한이 구청장에 이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무를 추가로 위임
- 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규 위임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 다. 「의료법」에 규정된 ‘지도와 명령’ 등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 라. 자치구에 위임된 택시 및 여객자동차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
- 마. 계량에 관한 사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품질시험소장과 구청장에 함께 위임된 사무 권한을 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다른 행정주체로 권한 이관된 위임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항 및 법제명을 변경
- 사.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명 정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 법령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6. 11. 17. ~ 12. 7.) 결과 : 별첨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홍민아 (☎ 2133-675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 일자리노동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구청장
	가.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라. 해산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정책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구청장
문화융합경제과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라. 폐쇄 및 수거 마. 청 문 바. 수수료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0조, 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음악산업법 제29조 ○ 음악산업법 제30조 ○ 음악산업법 제31조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제4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항, 제5항	
	나.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청장
	다. 부정 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구청장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4항	구청장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구청장
	바.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구청장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구청장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2조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구청장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43조	구청장
	4.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5.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대부업법 제12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마. 실태조사 등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법 제13조 ○ 대부업법 제16조 ○ 대부업법 제17조 ○ 대부업법 제21조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마. 감사의 추천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구청장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5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p> <p>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p> <p>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p> <p>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p> <p>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p>	<p>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5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5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p>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구청장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구청장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가목, 제24호가목,나목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p> <p>14.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p> <p>1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택시물류과	<p>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p> <p>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p> <p>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p> <p>2.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p> <p>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p> <p>다. 등록의 거부</p> <p>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p> <p>마. 변경등록의 처리</p> <p>바. 이전등록의 처리</p> <p>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17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p> <p>○ 「자동차관리법」 제7조</p> <p>○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p> <p>○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0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1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2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p> <p>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p> <p>차. 압류등록의 처리</p> <p>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p> <p>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p> <p>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p>	<p>○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p> <p>○ 「자동차관리법」 제14조</p> <p>○ 「자동차관리법」 제16조</p> <p>○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p> <p>○ 「자동차관리법」 제28조</p>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을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외국인 대상 부담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청장
	5.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6.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7.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8.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3호	구청장
	9.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10.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1.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구청장
	12.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17호까지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5조	
	나. 임대허가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7호까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청장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	구청장
	16.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차. 청문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파. 휴업·폐업의 신고</p> <p>하. 보고·검사 등</p>	<p>○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p> <p>○ 여객자동차법 제79조</p>	
주차계획과	<p>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p> <p>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p> <p>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p> <p>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p> <p>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p> <p>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p> <p>사.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p> <p>○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p> <p>○ 여객자동차법 제39조</p> <p>○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p> <p>○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p> <p>○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p> <p>○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p>	<p>구청장</p> <p>구청장</p>
교통운영과	<p>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p> <p>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p> <p>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p>	<p>○ 「도로법」 제55조</p>	<p>구청장</p> <p>도로사업소장</p>
교통지도과	<p>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p> <p>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p>	<p>○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p> <p>○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p>	<p>구청장</p> <p>직속기관장, 사업소장</p>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화정책과	<p>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p>	<p>○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p> <p>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p> <p>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p>	<p>시행령」(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p> <p>○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p>	구청장
문화예술과	<p>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나. 폐업 및 직권 말소</p> <p>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p> <p>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p> <p>마. 영업의 승계신고</p> <p>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p> <p>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p> <p>아. 직권취소</p> <p>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차. 청문의 실시</p> <p>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p> <p>○ 정기간행물법 제17조</p> <p>○ 정기간행물법 제18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1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2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3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4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5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6조</p> <p>○ 정기간행물법 제27조</p> <p>○ 정기간행물법 제33조</p>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p>	
녹색에너지과	<p>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p> <p>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p> <p>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p> <p>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마. 과징금 부과·징수</p> <p>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p> <p>사. 보고 및 검사</p> <p>아. 청 문</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p> <p>다. 과징금 부과·징수</p> <p>라. 보고 및 검사</p> <p>마. 청 문</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p> <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10조</p> <p>○ 석유사업법 제11조</p> <p>○ 석유사업법 제12조</p> <p>○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p> <p>○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p> <p>○ 석유사업법 제30조</p> <p>○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40조</p> <p>○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p> <p>○ 석유사업법 제33조</p> <p>○ 석유사업법 제34조</p> <p>○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p> <p>○ 석유사업법 제40조</p> <p>○ 석유사업법 제49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p> <p>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2호, 제5항</p> <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p>	구청장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p>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신고 및 변경신고</p> <p>나. 신고필증 발급</p> <p>다. 취소</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제2항</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6</p>	구청장
	<p>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전기사업법」 제71조</p> <p>○ 「전기사업법」 제108조</p>	구청장
	<p>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시정명령 등</p> <p>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p> <p>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p>	<p>○ 「전기공사업법」 제27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p> <p>○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p> <p>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p> <p>나.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업법」 제46조, 「전기공업법 시행령」 제18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0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8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p>구청장</p> <p>구청장</p>
기후변화대응과	<p>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p> <p>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p> <p>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p> <p>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다목까지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 실내공기질법 제13조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제12조 ○ 실내공기질법 제16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대기관리과	<p>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p> <p>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p> <p>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p> <p>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사. 청 문	○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다. 등록취소시 청문	○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	
	라. 과태료 부과	○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	
	라. 등록취소시 청문	○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	○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	
	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70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5. 교통소음 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p>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p> <p>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p> <p>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p> <p>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p> <p>마.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p> <p>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p> <p>다. 과징금의 처분 등</p> <p>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p> <p>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 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p> <p>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p> <p>아. 청문의 실시</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 「폐기물관리법」 제46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48조</p> <p>○ 「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3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6조</p> <p>○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p> <p>○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p> <p>○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p> <p>○ 건설폐기물법 제31조</p> <p>○ 건설폐기물법 제57조</p> <p>○ 건설폐기물법 제66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p> <p>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p> <p>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p> <p>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p>	<p>구청장</p> <p>구청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생활환경과	<p>1.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p> <p>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p> <p>라. 보고·검사 등</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p> <p>○ 「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3조</p> <p>○ 「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p>	<p>구청장</p> <p>구청장</p> <p>한강사업본부장,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p>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인사과	<p>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의회내 전보</p> <p>나. 휴직에따른 복직</p> <p>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p> <p>라. 호봉승급</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시의회 사무처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2. 시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p> <p>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시의회 사무처장</p> <p>당해 보조기관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p>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p>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p>	<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p>	구청장

수리	를」(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체육시설법 제14조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 체육시설법 제17조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 체육시설법 제1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체육시설법 제27조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 체육시설법 제28조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체육시설법 제36조
자. 과태료 부과 징수	○ 체육시설법 제40조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구청장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59조제1항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청장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구청장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류관리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 마약류관리법 제45조 ○ 마약류관리법 제46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약사법」 제69조 ○ 「약사법」 제71조 ○ 「약사법」 제73조 ○ 「약사법」 제74조 ○ 「약사법」 제76조의2 ○ 「약사법」 제81조 ○ 「약사법」 제98조 	구청장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p>	<p>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p>	구청장
식품안전과	<p>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 가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p>	<p>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청장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구청장
	4.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 록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시설변경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다. 등록증 재발급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 「사료관리법」 제25조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바. 업무감독	○ 「사료관리법」 제27조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아. 승계신고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자. 폐기 등의 조치	○ 「사료관리법」 제24조	
	차. 청문	○ 「사료관리법」 제30조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p> <p>다. 등록의 개정</p> <p>라. 등록의 말소 등</p> <p>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p> <p>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p> <p>사. 등록증의 재교부</p>	<p>○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p> <p>○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p>	
	<p>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p> <p>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p> <p>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p> <p>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p>	구청장
	<p>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p> <p>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p>	<p>○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p> <p>○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p>	구청장
	<p>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p>	<p>○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p>	구청장
	<p>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p> <p>나. 검사의 최고</p> <p>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p> <p>라. 기간연장</p>	<p>○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p> <p>○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p> <p>○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p> <p>○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p>	구청장
	<p>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보도환경개선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국도 및 시침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72조 ○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인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구청장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 승강기법 제21조 ○ 승강기법 제28조	
임대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24조 ○ 「주택법」 제56조제1항·제2항 ○ 「주택법」 제57조제1항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31조 ○ 「도로법」 제31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구청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 공원녹지법 제38조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 공원녹지법 제12조 ○ 공원녹지법 제13조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구청장 구청장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2. 장부의 기록·보존	○ 「하수도법」 제30조 ○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p> <p>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p> <p>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p> <p>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p> <p>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p> <p>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p>	<p>시행규칙」 제69조</p> <p>○ 「하수도법」 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p> <p>○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p> <p>○ 「하수도법」 제23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p> <p>○ 「하수도법」 제31조</p> <p>○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p>	<p>소 장</p> <p>물재생센터 소 장</p> <p>물재생센터 소 장</p> <p>물재생센터 소 장</p> <p>물재생센터 소 장</p> <p>물재생센터 소 장</p>
하천관리과	<p>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p> <p>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p> <p>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p> <p>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p> <p>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p> <p>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p>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 「하천법」 제5조</p> <p>○ 「하천법」 제15조</p> <p>○ 「하천법」 제14조</p> <p>○ 「하천법」 제52조</p> <p>○ 「하천법」 제30조</p> <p>○ 「하천법」 제30조</p> <p>○ 「하천법」 제33조</p> <p>○ 「하천법」 제36조</p> <p>○ 「하천법」 제38조</p> <p>○ 「하천법」 제68조</p> <p>○ 「하천법」 제69조</p> <p>○ 「하천법」 제70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p> <p>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p> <p>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p> <p>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p> <p>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p> <p>저.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p> <p>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p> <p>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p> <p>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p> <p>다. 점용료 등의 감면</p> <p>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p> <p>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p> <p>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p>	<p>○ 「하천법」 제72조</p> <p>○ 「하천법」 제90조</p> <p>○ 「하천법」 제47조</p> <p>○ 「하천법」 제48조</p> <p>○ 「하천법」 제76조</p> <p>○ 「하천법」 제77조</p> <p>○ 「하천법」 제78조</p> <p>○ 「하천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p> <p>○ 「하천법」 제89조</p> <p>○ 「하천법」 제91조</p> <p>○ 「하천법」 제98조</p> <p>○ 「하천법」 제27조</p> <p>○ 「하천법」 제37조</p> <p>○ 「하천법」 제37조</p> <p>○ 「하천법」 제67조</p> <p>○ 「하천법」 제46조</p> <p>○ 같은법 제10조제6항</p>	<p>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p> <p>구청장</p>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예방과	<p>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p> <p>나. 과징금 처분</p>	<p>○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32조</p> <p>○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p>	소방서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소방시설법 제31조 ○ 소방시설법 제32조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 소방시설법 제35조	소방서장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구청장

사무위임 조례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경제진흥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u>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u> 나. <u>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u> (1) <u>제작업</u>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품질시험 소장 품질시험 소장 품질시험

□ 경제진흥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민생경제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소장 구청장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품질시험 소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청장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품질시험 소장
	(3) 수시(수리)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품질시험 소장
	<신 설>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품질시험 소장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품질시험 소장 구청장
	사.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품질시험 소장 구청장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품질시험 소장 구청장
	<신 설>		
	<신 설>		
	자.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품질시험 소장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 말소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5항	구청장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청장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청장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4항	구청장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구청장
	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청장
	<삭 제>	<삭 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u>의 정지</u>		
	(1) <u>제작업</u>		품질시험 소장
	(2) <u>수입업 및 계량증명업</u>		구청장
	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품질시험 소장 구청장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2조	
	<u><신 설></u>		
	3.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이하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구청장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구청장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구청장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 도시교통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외국인 대상)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이하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예 술회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정책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 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이하 생략>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에 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 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신 설>	○ 「의료법」 제33조 제4항 ○ 「의료법」 제33조 제5항	구청장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 설>	○ 「의료법」 제35조 제1항 단서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도와 명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법」 제59조 제1항	(현행과 같음)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 「의료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이하 생략>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u>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u>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 푸른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	구청장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협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구청장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지정서 교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다. 지정 취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푸른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나. (현행과 같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다. (현행과 같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 소방재난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예방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이하 생략>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이하 5호 까지 '소방시설법'이 라 한다) 제29조	소방서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등 록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 까지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 제29조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p>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p>	<p>○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기관’에 관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무 및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사항의 변경’ 사무를 근거법령인 「의료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 무명과 동일하게 변경 요청</p> <p><개정조례안></p> <p>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u>부속 기관</u>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병원급 <u>의료기관</u> 개설허가 나. 병원급 <u>의료기관</u> 허가사항 변경</p> <p><변경요청안></p> <p>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u>부속 의료기관</u>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병원급 <u>부속의료기관</u> 개설허가 나. 병원급 <u>부속의료기관</u> 개설허가 <u>사항 변경허가</u></p>	<p>○ 반영</p> <p>위임사무의 명확화를 위해 「의료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적정</p>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신규 위임사무 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홍민아(☎ 2133-6753)